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7.

□ **정정 사유**

(1) 클래스 추가 : S, Cp, Cp-E, Cp2, Cp2-F, S-P

(2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506</u> <u>Cp : B5507</u> <u>Cp-E : B5508</u> <u>Cp2 : B5509</u> <u>Cp2-F : B5510</u> <u>S-P : B5511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506</u> <u>Cp : B5507</u> <u>Cp-E : B5508</u> <u>Cp2 : B5509</u> <u>Cp2-F : B5510</u> <u>S-P : B5511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4.12.30 :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<u>2015.07.17 : 클래스 추가(S, Cp, Cp-E, Cp2, Cp2-F, S-P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 4. 30.	<u>2015. 6. 30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<u>S클래스(펀드코드 : B5506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</u>

		<p>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Cp클래스(펀드코드 : B5507)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Cp-E클래스(펀드코드: B5508)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Cp2클래스(펀드코드: B5509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p> <p>Cp2-F클래스(펀드코드 : B5510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p> <p>S-P클래스(펀드코드 : B5511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</p>	<p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변경 내용 반영</p>	<p>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40 펀드[채권혼합] 명칭 변경</p>
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매입</p> <p>2) 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⑩ S클래스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⑪ Cp클래스 :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⑫ Cp-E클래스 :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⑬ Cp2클래스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⑭ Cp2-F클래스 : <u>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⑮ S-P클래스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---	---------------	--
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 <p>3) 환매수수료</p>	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환매수수료 기재</p>	<p>A, Ae, C1, C2, C3, C4, Ce, W, I, S 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Cp, Cp-E, Cp2, Cp2-F, S-P : 환매수수료 없음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재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재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재</p>	<p>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명칭 변경 및 클래스 추가 내용 반영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</p>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의무해지</p>	<p>자본시장법 반영</p>	<p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p>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임의해지</p>	<p>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</p>	<p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p>